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5월 14일 (수) · 주간제 20호 · 통권 제 1727호 · 종합소득세 신고 체크포인트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5/ 14 통권 1727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
-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라도, 재직시의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됨(수정신고)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 經營 戰略

<각종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과세방법>

대상	원천징수세율	최종 과세방법
강연·원고료, 일시제공 인적용역, 재산권무형자산	40%×20% = 8.8% (열거된 것만)	종합소득에 합산 (총수입의 40%)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소득금액의 20% (3억원 초과분 30%)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 종결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2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부득이한 사유*	3%, 4%, 5%
	그 밖의 사유	15%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금품	-	무조건 종합과세합산
위 이외의 기타소득	소득금액의 20%	금액 조건부 종합과세임 •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초과시 → 종합과세에 합산함 • 기타소득금액 ≤ 300만원 이하시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종교인소득	급여액× 20%~80%만 과세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은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7호 / 주간 20호

2025. 5. 14.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각종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와 과세방법	표지
CEO의 경영산책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업무차량 폐차시 유보금액 처리 방법 - 택시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 사내복지기금 - 해외 타처 보관시 고려 사항 -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에 대한 문의	5 6
눈에맞는 절세미인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개인과 법인 주택의 단계별 세금 비교	9 10
직장인Survival	독서 습관이 주는 5가지 긍정적 변화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기본-2595, 2024.11.28)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서면법규법인-3269, 2024.09.27)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6월 2일까지 해외주식 등 양도세 확정신고... 국세청, 14만명에 안내문 발송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라도, 재직시의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됨(수정신고)	11
세무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 평가로 바로잡아	15 3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최근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언상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구조"이며 '이사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공평 대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법률상 불확실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해 "일반주주 보호에 역행하고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담론을 위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2023)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기초, 주주 및 주요 소유권 기능의 권리 및 공평한 대우, 기관투자자, 주식시장 및 기타 중개기관, 공시 및 투명성, 이사회 책임,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의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 체계의 기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지배구조체계(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체계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효과적인 감독(supervision)과 집행(enforcement)을 지원해야 한다.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OECD 2023.9.11. 9-13 분석 요약 인용함.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참가자들이 사적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법적, 규제적,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체계는 해당 국가의 특수한 환경, 역사, 전통의 산물인 법률, 규정, 자율규제 약정, 자발적 참여, 사업 관행 등을 요소로 한다. 이러한 법률, 규정, 자율규제, 자발적 기준 등의 바람직한 혼합 형태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기업 지배구조체계의 법률적·규제적 요소는 기업지배구조 헌장(corporate governance codes)처럼 자율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위반시 사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에 기초한 연성법적 요소(soft law elements)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연성법적 요소를 이용하면 융통성(flexibility)을 제고하고 개별회사의 특수성(specificities)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요소가 모든 상황에서 특정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 효과적일수 없다. 따라서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 관행(best practive)을 장려하거나 특정 상황에 맞는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는 금융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전반적인 경제성과 및 재무 안정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복원력,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 시장 참가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투명성과 원활한 시장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 사전적으로 'integrity 는 완전성(completeness), 건전성(soundness), 정직성 (honesty), 성실성(sincerity) 등을 의미하나,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님. 주요 감독당국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integrity 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i) 내부자거래(inside trade), 시장조작(market manipulation)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지위의 남용 행위(abuse activities)가 없는 상태 (ii) 차별(discrimination)이 없는 상태 (iii)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보 제공(transparent and accurate information)이 이루어지는 상태 등을 의미 (Janet Austin, 'What xactly is Market Integrity? , William&Mary Business Law Review, 215(2017)). 이하 예서는 이상의 의미를 담아 '완결성 으로 번역. (G20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2015) 번역본, 한국은행 금융검사실, 2018. 12. p.9 인용함.)

그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보완성,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전반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과의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협의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 기업지배구조제체는 전반적인 경제적 성과, 시장의 완결성, 시장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의 투명성과 기능성 제고를 염두에 두고 발전되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제적 사항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에 부합하고, 투명성과 강제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배구조강령(corporate governance codes)은 그 위치가 정당하게 정의된 경우, 기업의 모범 사례 개발과 진화를 지원하는 보완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 여러 기관에 책임을 분배하는 경우 관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며 공익 (public interest)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주식시장에 대한 규제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감독당국·규제당국·집행당국이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권한과 청렴성은 물론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감독당국·규제당국·집행당국이 내리는 결정은 시의적절하고, 투명하며, 완전히 설명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업그룹 내 상장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적절한 기업지배구조 체계하에서 잘 운영되는 기업그룹은 규모의 경제, 시너지 효과 및 기타 효율성에 기반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기업그룹은 경우에 따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불공평한 거래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그룹 기업집단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구조인 경우 특수 관계자 거래로 인해 그룹 구조내에서 상장된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일부 그룹 회사는 그룹의 세무 계획 전략의 일환으로 그룹 내 자금의 이동, 이사회 내지 임원 보수 또는 배당금 지급에 그룹 이체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규제당국이 기업그룹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체계가 이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이 그룹회사 경영 활동을 자율 규제하는 도구로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채택 활용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그룹사도 그룹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그룹 기업지배구조 지침을 제정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2일(금)	5월 7일(수)	5월 8일(목)					
미	달	러	(USD)	1426.90	1426.60	1394.10					
일	본	엔	(JPY)	980.89	995.92	969.17					
영	국	파운	(GBP)	1895.14	1903.73	1852.69					
캐	나	다	달	러	(CAD)	1030.07	1035.72	1007.55			
홍	콩	달	러	(HKD)	183.95	184.06	179.67				
중	국	원	(CNH)	196.60	196.92	193.23					
유	로	화	(EUR)	1611.54	1617.27	1575.82					
호	주	달	러	(AUD)	910.65	927.93	895.92				
싱	가	폴	달	러	(SGD)	1088.12	1106.79	1077.02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30.68	337.06	328.87

업무차량 폐차시 유보금액 처리 방법

Q 안녕하세요
작년 업무차량을 사고로 폐차하였습니다.
동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남아 있는데 기말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처분(폐기)시점에 상각시부인 유보금액 전액을 (-)유보로 추인하고, 처분(폐기)하는 해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하며, 남은 부분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하시면 됩니다.

택시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Q 택시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A 택시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내복지기금

Q 사내복지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해년 순익의 몇%로 비슷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예 연말에 총당금으로 설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사내복지기금 지급액은 총당금으로 설정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지급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외 타처 보관시 고려 사항

Q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판매 법인)에 판매용 기계를 보관하고, 현지에서 기계가 판매될 때 매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판매용 기계가 현지에 있다 하더라도 고객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 해외 타처 보관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판매시에 인식하면 되는지요?
2. 해외 타처 보관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보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런지요?

1. 국내에서 제작 또는 구입한 기계를 해외에 보관하는 경우라면 국내에서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라도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울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입하여 보관하다고 판매시는 판매시점에 매출인식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반영하면 됩니다.

2. 해외 보관에 대한 법적제한이나 기간등은 세법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규정은 없으나, 타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취 및 대금지급에 대한 문의

Q 당사는 현재, 당사의 구매주문에 대하여 한국바스프(주)에 의해 승낙/수행되고, 청구되며, 전달된 선하증권을 이용하여 당사가 수입 통관하는 머천트 비즈니스 모델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급까지는 거래처로부터 면세계산서와 인보이스를 수취하였지만, 향후에는 세금계산서와 인보이스를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기획재정부 유권해석)된다고 합니다.

현재 당사는 인보이스(외화)로 외상매입금을 계상하고 지급하고 있지만, 향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시에는 부가가치세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거래처에서 공급가액은 기존방식으로 인보이스(외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만큼은 원화로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처가 요청하는 지급방식은 특이할 뿐아니라 세법적으로도 문제를 야기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법에 근거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세법에는 거래대금 지급시의 결제통화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다른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세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과세표준만 정확하다면 세법상 문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5년 6월2일까지 2024년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에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 ① 2024년도 중에 폐업하였다더라도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근로소득자가 2024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를 하였더라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2024년에 사망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되는 경우라도 2025년 5월 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2024년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25년 5월 신고 때까지는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차남이나 출가한 딸이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누락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자

연말정산 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또는 작년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빼먹기 쉬운 공제항목은 미취학 자녀의 정규학원비와 정치자금 기부금,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인적공제(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기타소득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합산과세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합산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용	공제율(한도)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	15%(연 250만원)
	전통시장 소비액	40%(연 200만원)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 의료비	15%(연 700만원)
	자녀 교육비	15% (미성년 연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5%(연 500만원)

※연 소득 7000만원 초과 직장인 기준

화

양도소득세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적용에 따른 취득단가 차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1. 100주 매수	주당 30만원	주당 40만원
2. 100주 매수	주당 40만원	주당 40만원
3. 100주 매수	주당 50만원	주당 40만원



개인과 법인 주택의 단계별 세금 비교

	개인	법인
취득세	1주택 : 1-3% 일반 3주택, 조정지역 2주택 : 8% 일반 4주택, 조정지역 3주택 : 12%	주택수 상관없이 12%
종합부동산세	2주택 이하 : 0.5-2.7% 3주택 이상 : 0.5-5.0%	2주택 이하 : 2.7% 3주택 이상 : 5.0%
양도세	일반세율 : 6-45% 조정지역 2주택 : 일반세율 + 20% 조정지역 3주택 : 일반세율 + 30%	법인세율 : 9~24% + 20%



2025년 의무심층평가대상 조세특례 항목의 심층평가 환류 결과

조세특례 항목	연도	심층평가 결과	최종 반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6	장기적 축소·폐지 ¹⁾	제도 재설계
	2018	축소연장	확대연장
	2022	제도 재설계	확대연장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7	장기적 축소·폐지	축소연장
	2020	장기적 축소·폐지	확대연장
	2022	장기적 축소·폐지	단순연장 ²⁾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19	축소연장	단순연장
	2022	축소연장	단순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7	제도 재설계	단순연장
	2020	축소연장	단순연장
	2022	축소연장	단순연장

1) 장기적 축소 폐지는 원칙적으로 제도의 축소·폐지가 필요하나 경제적 여건,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일몰 연장을 건의한 경우

2) 감면 대상에서 수도권 중기업을 제외하였으나 알뜰 주유소에 대한 우대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단순연장으로 분류



독서 습관이 주는 5가지 긍정적 변화

1.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책은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하나의 흐름과 논리를 전달합니다. 꾸준한 독서는 사고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여유와 균형을 더해줍니다.

2. 말과 글이 자연스럽게 정돈됩니다

다양한 문장 구조와 어휘를 접하다 보면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말이 정제되면 설득력이 높아지고, 글이 매끄러워지면 업무 보고서부터 이메일까지 달라집니다.

3.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문학, 에세이, 인문서를 통해 타인의 시선과 감정을 따라가는 연습은 자연스럽게 감정 조절과 공감 능력을 높여줍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드럽게 대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4. 자기 성찰이 깊어집니다

책은 종종 우리를 멈춰 세우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의 가치관, 일하는 태도, 관계의 방식까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며, 성장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5.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생깁니다

독서는 단지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예측하며, 더 나은 선택을 위한 판단력을 기릅니다. 하루 10분의 독서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의 격차를 만들고, 결국 삶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최신판례예규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기본-2595, 2024.11.28

질 의

- 질의인은 사업소득(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로,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음
 - 도소매업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로 신고함

질의

- 타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한 경우, 국기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의

회 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같은 조 제1항의 “무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라도, 재직시의 근로성
과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됨
(수정신고)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식 수와 지급기
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
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53, 2024.11.18

질 의

- 특정 조건이 달성될 경우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퇴직 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사주 배정계약을 하는 경우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소득 구분 및 귀속시기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소속법인의 자사주 배정 계약 및 지급규정(이하 “쟁점계약”)에 의해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는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 후 개인별 지급받을 주

식 수와 지급기일이 확정되고 자사주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등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입니다.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서면법규법인-3269, 2024.09.27

■ 질 의

- 사회복지법인 A재단은 상증법상 공익법인(상증법 16①)으로, 소득령 80①(3)에 따른 신탁(「기부신탁」)의 형태로 기부금을 받을 예정

질의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 시기

■ 회 신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인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기부신탁’)을 설정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은 기부신탁계약의 원본 또는 수익이 해당 공익법인에 실제 지급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아 세무처리 하는 것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720, 2024.08.29

■ 질 의

- 질의인은 '24.2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그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3천만원)를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이하 "쟁점 전환금액")하려고 함
 - '24년 연금저축계좌로 납입된 쟁점 전환금액에 대해 『소득세법』 59의3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예정임
 - 한편, '25년 연금저축 불입액이 없는 경우, 쟁점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 『같은 법 시행령』118의3 규정에 따라 '25년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할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한도액 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함
- 『소득세법』 59의3③에 따른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6월 2일까지 해외주식 등 양도세 확정신고... 국세청, 14만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의 경우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통해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제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이번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불성실신고 및 성실신고 관련해 엄격한 사후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무조건 작년처럼 소득세 신고... 국세청 사전안내 무시하면 '가산세'

국세청이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도 불충분하게 신고할 경우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성실신고 사전안내문)'를 모바일로 보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사후검증 시 납세자의 1년 치 세금신고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의 차원에서 몇 년 치를 한꺼번에 검증한다.

과거 잘못 신고한 것이 있다면, 미리 사전안내 자료를 확인해 수정신고해야 앞으로 발생할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별 세부사항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서비스' 내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성실신고에 도움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부분 놓치지 마세요

- 국세청, 2025. 5

-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적극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실시합니다.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는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5.7.(수)에 모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성실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 |

- 1]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2]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 4] 해외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 (안내 내용 확인)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입한 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정보 |

귀속년도		2024 ~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안내자료	신고상황 종합분석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
· 신고안내유형 · 기장의무 · 납부기한 연장여부	· 개인별 유의사항 · 업종별 유의사항 · 동일사업자평균소득률 (업종수입금액지역)	· 사업장별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 소득세액공제 항목 · 신고시 적용할 가산세	· 최근 3년간 종합 소득세 신고상황 · 매출액 대비 주요 판관비율 분석	· 주택임대 수입금액 · 국내 주택보유 내역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 및 신고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도움자료 제공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신고내용 확인 추정 사례(참고자료) |

①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정한 사례
②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정한 사례
③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정한 사례

참 고

신고내용 확인 추정 사례

사례 1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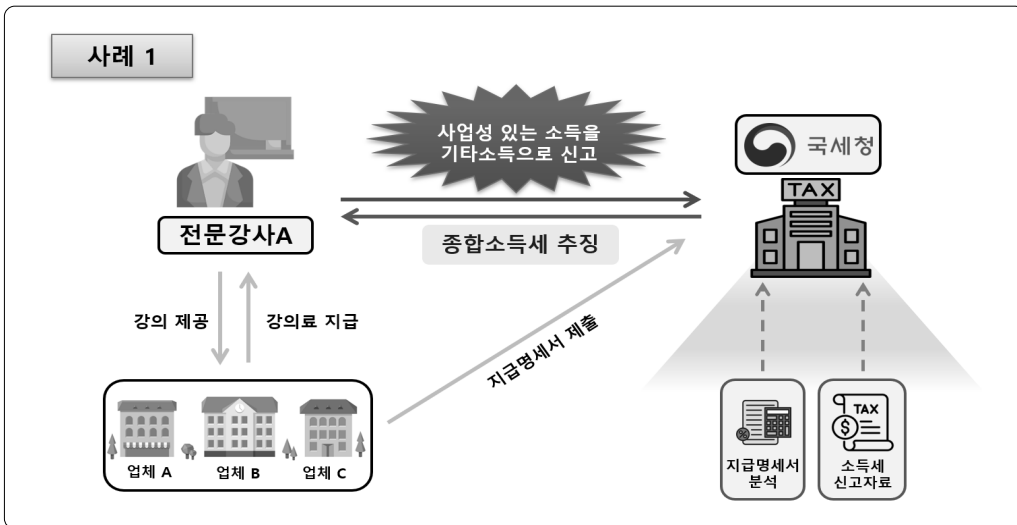
분석 내용

-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로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 확인 결과

-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
 -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례 2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을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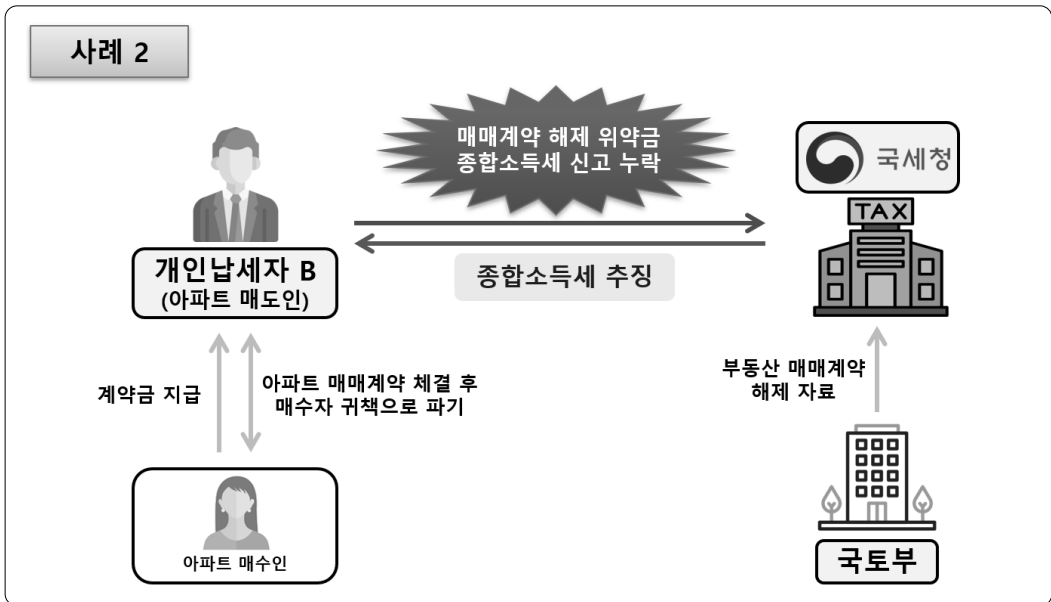
분석 내용

-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함
 -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

당하며,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 분석 결과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 확인 결과

- B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하여 B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
 - B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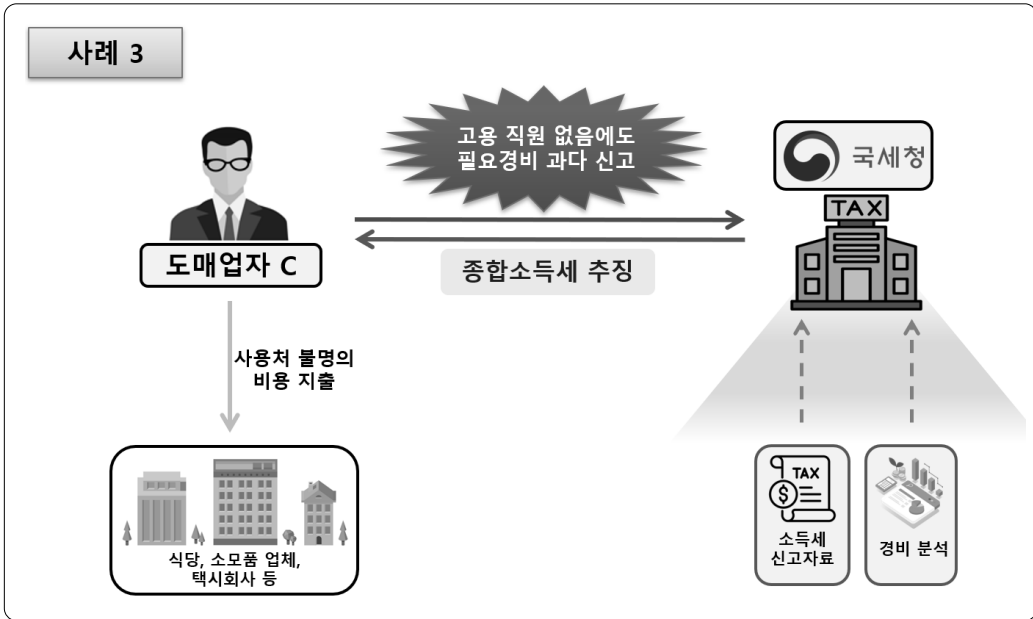
사례 3 직원 없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분석 내용

- 도매업자 C는 고용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직원이 없음에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함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없는 반면 종업원 관련 필요경비 비율이 동종 업종 대비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어, 필요경비 허위 계상 혐의로 분석대상자 선정

신고내용 확인 결과

- C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거래 자료 등을 대사한 결과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경비임을 확인
 - C는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비용들을 경비에 포함시켜 소득을 축소했음을 시인하고, 관련 경비를 제외하여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 성실신고확인제도 주요 문의사항('24 귀속)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text{주업종}^{1)}\text{의 수입금액} + \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2)}}{\text{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1)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2)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소득세과-729, 2019.5.23.)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방법

-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폐업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장과 별개로 해당 사업장 수입금액에 의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6.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방법과 신고기한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출하는 것이며,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7. 사업장이 2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

- 확인서 미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8. 개인이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을 통합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가능 여부

- 성실신고확인서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므로,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는 경우 사업장 각각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9.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 후,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비용과 합한 금액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17년 귀속까지는 100만원)로 공제하는 것임

10. 일부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 '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함

11. 확인서 중 표준손익계산서 항목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등 가능 여부

-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항목은 확인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한 확인서로 볼 수 없으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1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및 의료비 등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조특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조특법 제126조의6에 의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나, 조특법 제122조의3에 의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임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제조업 15억 (2024.5.1. 신규사업자)	대상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이상 * 신규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
② 부동산임대업 4억 (전년도 제조 50억원인 경우)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 전년도 업종 및 수입금액과 무관
③ 음식업(6.30. 폐업) (7억) 도매업(10.1. 개업) (5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2.5억(5억×7.5/15)

④ 제조업 7억 (7.1.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할 때까지의 수입금액임)	대상 아님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 폐업, 법인전환해도 환산하지 않음
⑤ 도매업 13억, 제조업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15억) 이상 * 도매 13억+도매환산 2억(1억×15/7.5)
⑥ 음식점 7억, 부동산임대 1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음식 7.5억) 이상 * 음식 7억+음식환산 1.5억(1억×7.5/5)
⑦ A사업장(제조 3억, 도매 2억) B사업장(제조 2.5억, 도매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 7.5억) 이상 * 제조 5.5억+제조환산 2억(4억×7.5/15)
⑧ A사업장(도매 10억) B사업장(부동산임대 2억)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도매 15억) 이상 * 도매 10억+도매환산 6억(2억×15/5)]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판정 사례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대상판정	산정이유
① 공동사업장 서비스업 8억 [손익분배비율 50%]	대상	주업종으로 환산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서비스 5억) 이상 * 공동사업장별(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수입금액 합산)로 판단, 손익분배비율과 무관
②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업 4억 [손익분배비율 80%], 단독사업장 제조업 7억	대상 아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미만 단독사업은 제조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7.5억) 미만
③ 공동사업장A 부동산임대업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단독사업장B 부동산임대업 2억 단독사업장C 소매업 1.5억	공동 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임대업 수입금액이 기준금액(5억) 이상 단독사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 2.5억 * 임대 2억+ 임대환산 0.5억(1.5억×5/15)

④ 공동사업장A 제조 8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병]	A사업장만 대상	공동사업장A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이상 공동사업장B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제조7.5억) 미만 *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별로 판단
⑤ 공동사업장A 제조 10억 [공동사업자 갑, 을], 공동사업장B 제조 4억 [공동사업자 갑, 을]	A, B 사업장 모두 대상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 금액(제조 7.5억) 이상 * 구성원이 일치하는 공동사업장은 1 공동사업장 으로 보아 판단

■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서면-2016-소득-5616, 2016.11.04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경우 기한후 신고에 해당함

4. 서면-2016-소득-3671, 2016.10.26

거주자가 임가공 제조업을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주택건축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5.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166, 2016.04.01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세법개정으로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18귀속 부터)

6. 서면-2015-소득-0627, 2015.05.21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의자A와 공동사업장은 도·소매업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 기준수입금액인 20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7.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

「소득세법」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8. 서면-2015-소득-0176, 2015.05.12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사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74조 1항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9. 서면법규과-611, 2013.05.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 법규소득2013-214, 2013.07.01

「소득세법」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1. 징세과-1037, 2012.09.2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

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2. 소득세과-463, 2012.06.0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8년 귀속부터는 120만원

13. 소득세과-461,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3개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하는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2, 2012.03.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182, 2012.03.06)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4. 소득세과-364, 2012.04.30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5. 소득세과-348, 2012.04.25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확인서”에 첨부하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16. 소득세과-335, 2012.04.21

귀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사업장 B를 갑과 을이 경영함에 있어, 갑이 단독사업(A) 또는 다른 공동사업(C)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B의 구성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을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연장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7. 소득세과-182, 2012.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 2024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사업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text{총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옥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 다만,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 옥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text{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frac{\text{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text{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times \left(\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right)$$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 추계신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text{산출세액} \times [\text{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금액}] \times 20\%$
--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2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3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간편장부 안내

● 간편장부는 무엇인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19호(2024.07.19.) 「간편장부 고시」)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육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육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p>전문직 사업자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각종 공제·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서식

①일자	②계정 과목	③거래 내용	④거래처	⑤수입(매출)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5	매출	○○판매	(주)□□	10,000, 000	1,000, 000					세계
1.15	상품	○○구입	△△상회			5,000, 000	500,00 0			세계
1.20	접대비	거래처 접대	○○식당			200,00 0				카드등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 ②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구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 ③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④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⑤ 수입 : 상품·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자동차·컴퓨터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매입(설치·제작·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⑧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제품·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체적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

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			비고
	사업유형	업종	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7)	과세/일반과세자	스크린인쇄업	(222102)	
건설업(451101~453000)	과세/일반과세자	인테리어	(4521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과세/일반과세자	건설장비운영	(453000)	
도매업(512111~519992)	과세/일반과세자	의류도매	(513121)	
소매업(521001~525912)	과·면세겸업/ 일반과세자	마트	(522071)	
숙박업(551001~551017)	과세/일반과세자	모텔	(5510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음식업(552101~552310)	과세/일반과세자	한식	(552101)	
운수업(601000~641201)	과세/일반과세자	개별화물운송	(602310)	
부동산임대업(701101~701504)	과세/일반과세자	상가임대	(701201)	
교육서비스업(809001~809022)	면세사업자	태권도학원	(8090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22102~922204)	과세/간이과세자	자동차전문수리	(9222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924101~924917)	과세/간이과세자	노래방	(924903)	
인적용역(940100~940929)	인적용역사업자	학원강사	(940903)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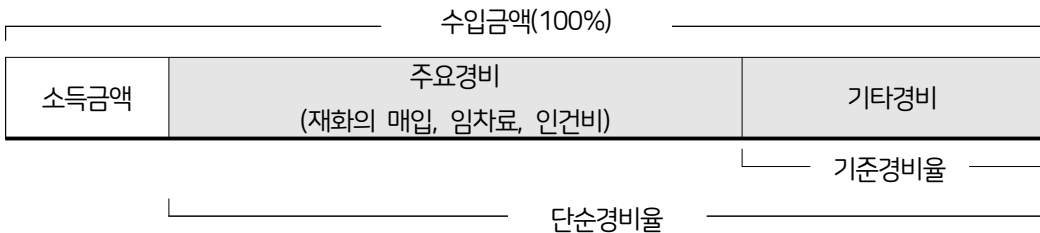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1 경비율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중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3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143③,④)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 기존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령§143④)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이 배제됨(소득령§143⑦)

업 종 별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 (직전연도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해당년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기준은 3,600만원을 적용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8조①)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4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소득령§143⑥, §208⑦)

$$\text{주업종 수입금액} + \text{주업종외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 기준금액}}{\text{주업종외 기준금액}}$$

-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소득령§208⑤2, §143④2)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소득령§144③)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소득세법§87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70-0...2③)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서면1팀-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득세법§73①4, 소득령 §137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득세법 §144의2①, 소득령§201의11④, 소득칙§94의2)

$$\text{연말정산소득금액} = \text{총수입금액} * \text{소득율}(1-\text{단순경비율})$$

구 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율(1-단순경비율)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20.0%	28.0%

-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령§201의11⑩)

6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times 20\% = 92.2$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 : {40,000천원 - (40,000천원×75.0%)} + {5,000천원 - (5,000천원×65.0%)} =
 11,750천원

7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
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
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
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소득령§143③1호 다목 단서)

***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22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22년 기준경비율 21.0%의 1/2인 10,500,000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70④3호에 따른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법 §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 §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 §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소득칙 §67)

추계소득금액 계산(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귀속 기장의무	2007	2008	2009	2010- 2015	2016- 2019	2020- 2024
간편장부대상자	2.0배	2.1배	2.2배	2.4배	2.6배	2.8배
복식부기의무자	2.4배	2.6배	2.8배	3.0배	3.2배	3.4배

[문] 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4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4배)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 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23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배를 적용한다.

•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

8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업태별·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음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9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2021-54호), 2021.9.15.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



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 ① 음식료 및 숙박료
-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24-31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4, 2016.01.29.)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

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begin{aligned} & \text{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 = \text{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times (\text{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 \quad - \text{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end{aligned}$$

10 주요경비의 증명(소득령 § 143⑤)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증명서류
 -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



- 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음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별지 제40호 서식(1) 제25쪽]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함.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한 상속·증여 ‘고가주택’, 확대된 국세청 감정평가로 바로잡아

- 국세청, 2025. 5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 지난해까지('20년~'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5.5조원) 대비 75%가 증가한 가액(9.7조원)으로 과세하였고,
 - 올해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45억원 → 96억원)하여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 * 관련 보도참고자료 :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24.12.3)」
- '25년 1분기에 국세청은 총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하여 신고액(2,847억 원)보다 87.8%가 증가한 가액(5,347억 원)으로 과세하였습니다.
 -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습니다.
 -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1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 부동산 종류별 감정평가 실적('25년 1분기) >

종류	건수	신고액(①)	감정액(②)	건당 증가액	증가율 [(②-①)/①]
꼬마빌딩	41	1,861억	3,339억	36.1억	79.4%
주택	34	986억	2,008억	30.1억	103.7%
합계	75	2,847억	5,347억	33.3억	87.8%

단독주택 감정가액 증가율(151%) 가장 높고, 대형 아파트 '세금역전' 확인

□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습니다.

< 주요 단독주택 감정평가 사례('25년 1분기) >

지역	연면적	신고액(①)	감정액(②)	비율(①/②)	증가율 [(②-①)/①]
서울 논현동	255㎡	37억	140억	26.4%	278.4%
서울 삼성동	309㎡	33억	95억	34.7%	187.9%
서울 삼성동	143㎡	25억	74억	33.8%	196.0%

-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되었습니다.
-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 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 원)보다 낮았으며,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더 낮은 사례(청담동) >

구분	신동아빌라트 (226㎡)	청담 자이 (49㎡)
기준시가	20억	14억
신고가액	20억(기준시가)	21억(매매가액)
결정가액	40억(감정가액)	21억(매매가액)

<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더 낮은 사례(용산구) >

구분	푸르지오써밋 (190㎡)	신동아아파트 (85㎡)
기준시가	23억	12억
신고가액	23억(기준시가)	24억(매매가액)
결정가액	41억(감정가액)	24억(매매가액)

<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더 낮은 사례(동일 단지) >

구 분	압구정 현대 (108㎡)	압구정 현대 (80㎡)
기준시가	23억	19억
신고가액	23억(기준시가)	30억(매매가액)
결정가액	37억(감정가액)	30억(매매가액)

- 이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시가 대신 시가로 신고하는 납세자 많아져... 시가 과세 정착 기대

- 지난해 국세청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상속·증여재산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납세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25년 1분기에 고가 부동산(기준시가 20억 원 이상)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60.6%)은 '24년(48.6%)에 비해 약 12%p 높아졌습니다.
 -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자발적 감정평가 신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시가에 따른 상속·증여 신고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조개기 증여” 등 회피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더불어,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 평가방법

□ 재산평가 적용 순서(상증법§60, 상증령§49)

- ① 당해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②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 ③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 →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 ①,②항에서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참고 2 감정평가사업 성과

구분	예산	건수	신고가액	감정가액	증가율
'20년	19억	113건	0.7조원	1.3조원	68 %
'21년	46억	248건	1.5조원	2.5조원	74 %
'22년	46억	174건	1.1조원	1.9조원	76 %
'23년	45억	192건	1.2조원	2.0조원	72 %
'24년	45억	169건	1.0조원	1.9조원	84 %

참고 3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서울고법 2023-누-42333, '24.8.20.)

-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